



기안자	주택과	전화번호	267	공보	필	요	불필	요	
주택계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국장	집시	주시	주부	시	시	상	
제	<p>Handwritten signatures and stamps are present in this section. A circular stamp contains the text: "공보 11.8.1966 HX267". Another stamp contains "검열 1966.8.16 서울특별시 공채관".</p>								
전									
조									
결									
의									
결	영	조	자	66.8.10	년	월	일	1966. 8. 16	
의	서	명	기술계장	예산2계장	예산과장	안	안	정시	
정	기	년	월	일	66.8.10	년	월	일	
함	분	류	기	호	470-	문	서	번	
호	경	수	찰	유	심	조	각	안	
정	제	목	66 제2종 공영주택 건설계획 변경						장
함	제	1	안	내	부	결	제	관	

제  
전  
조  
결  
의  
결  
함

8.16  
정

8.16

1. 서도주 470-1307(66. 7. 21)에 의거 건설부 장관에게 66 제2종 공영주택 건설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바 있으나

가. 별첨 공한 내용과 같이 건설부 장관의 조건부 승인한다는 회시 공한을 접한바

나. 66. 7. 21자 기재절을 독한바 있는 공영주택 건설 요령"안"중 다음 사항을 변경 삽입및 생략코져 합니다.

2. 변경사항

가. 동요령 제1항 "용자내용 및 제2항 "설계기준"에 명시된 토당 건평 17평 이상을 토당건평 ~~이하~~ 9평이하 15평 <sup>으로</sup> 이하로 변경 공그한에 명시된 토당 건평도 정정 시행코져 합니다.



174

4-1

4-2 NK

~~3. 삽입코저 하는 사항~~

~~가. 제2항 설계기준에 내 방을 신설 다음 사항을 삽입~~

함.

~~나. 선정된 조합에서는 연립주택 50% 이상을 건설하여~~

~~야한다.~~

4. 생략코저 하는 사항

가. 동 요령 11항 기타 참고사항의 다항중 주택 조합

조직요령 작성은 이를 생략한다.

"안 2"

내부결재

제목 1966년도 주택조합 모집공고

1. 1966년도 당시 주택건설 사업 계획 주택조합 모집 공고를 다음"안"과 같이 시중 일간 신문에 공고 희망자를 널리 모집코저 합니다.

가. 공고신문명 서울신문

나. 공고기간 1일간

다. 공고료 15,000원

라. 공공횡수 3단 50행

마. 지출방법 청구에 의하여 직불함

바. 지출과목 주택비특별회계

(관) 주택사업비 (항) 사업관리비 (목) 수수료및 수선비

첨부 공고안 1

160

서울특별시 공고 제 16호

공영주택 (조합주택) 공채 공고

1966년도 당시 주택건설 계획에 의한 건설 희망자를 다음 요항에 따라  
 무주택 서울 시민을 상대로 공적합.

1966. 8. 16  
 1966. 8. .

서울특별시 장 김 현 옥

1. 공영주택 (조합) 신청절차

가. 서울시민 중 무가옥자 40 - 60명 이상 단위로 조합을 구성 조합  
 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 1) 대지조사 신청서 1통
- 2) 건축대지 증명서 1통
- 3) 등기 부동산 1통
- 4) 조합원 명단 1통
- 5)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엔 매매계약서 및 <sup>=사본과 매도인의</sup> 인감증명 또는  
 지주의 사출 승락서 1통
- 6) 무가옥 증명 1통 (조합원)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1966. 8. 31 부터 1966. 9. 3 ( 4일간 )

당시 도시계획국 주택과

- 1) 추첨 일시 및 장소 : 대지 조사 결과 적격 한 조합에 한하여  
 추후 통지함

2. 공영주택 (조합) 건설 대상지

가. 성동구 성수동 1가 ( 성동교 ) 에서 위치할 7가지의 도로연변  
 및 동대문구 면목동 도지구획 지구 내

3. 모집 조합원

- 가. 성수동 . . . . . 1개 조합
- 나. 면목토지 구획 지구 4-3 1개 조합

4. 건설포수

가. ↓ 60호

나. — 40호

5. 도량용수 감교역 — 180,000원

6. 기타 상의한것은 당시 도시계획국 주택과(현 건설국) 공영주택  
(포함) 건설요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77

4-4